

#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 2. 제안이유

- 구미성리학역사관의 역사적·문화적 기능 명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대관시설을 변경하여 행정의 통일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 대관시설 변경(안 제28조, 별표 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당초) 백운재 → (변경) 풍류관
- 용어, 인용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4조, 제6조, 제11조~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제30조, 안 별표 2~별표 4, 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구미성리학역사관의 역사적·문화적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보완하고, 대관시설을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 검토 결과,

- 목적 조항을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문화 계승, 지역의 문화 향유 증진 까지 확대함으로써 역사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화 하였음. 또한 접근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던 기존 대관시설을 ‘풍류관’으로 조정하여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중심의 성리학 콘텐츠 확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술·전시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목적 조항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의 범위가 성리학 기반의 지역 유교문화 전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역 정체성 전반을 포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집행 부서는 운영지침 등을 통해 적용 기준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